

【 3 】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안

제출연월일 2008. 1. .

제 출 자 양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개별 구성되어 있는 재정관련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 재정관련 위원회 기능을 통합, 「양주시 재정운영 위원회」를 새로이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- 시의 건전재정, 효율적 운영 및 계획적·합리적 재정운영방향 제시

나. 재정운영위원회 기능(안 제2조)

-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기능)
- 재정투·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(투자심사위원회 기능)
- 개별 및 통합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(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 기능)
-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(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기능)
-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(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기능)등

다.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(안 제3조)

- 위원장, 부위원장은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함.
-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과 예산업무 담당과장,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, 학계, 관계 민간전문가로 구성

라. 위원회 회의(안 제4조)

- 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심의, 지방재정투융자심사, 지방재정공시심의,

예산성과금 심사 시 개최

-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
 - 위원회는 안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음.
- 마. 재정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정함(안 제6조)
- 재정자문단은 위촉위원 중 학계, 민간 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
 - 재정자문단은 시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자금운용,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경영성과 예측 및 분석,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음
- 바. 위원의 임기 및 해촉과 보궐위촉에 관하여 정함(안 제7조, 제8조)
-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,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, 연임 가능
 - 위원 임기 중 질병, 본인의사 등으로 해촉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보궐 위원을 위촉 가능.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.
- 사. 심의사항의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청취에 관하여 정함(안 제10조)
-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음.
- 아. 수당 및 여비 지급(안 제11조)
-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지급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양주시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·심의·심사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양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기능)
 - 가.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
 - 나.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 - 다.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
2. 법 제37조 및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44조, 「양주시 재정투·융자사업 심사규정」에 의한 재정투·융자에 관한 사항(양주시 투자심사위원회 기능)
3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 및 「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의한 개별 및 통합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(양주시 통합 관리기금 운용위원회 기능)
4. 법 제60조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(양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 위원회 기능)
 - 가.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
 - 나.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
5. 법 제48조 및 「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」에 의한 예산 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(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기능)
6. 시 재정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과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-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, 학계, 시민단체,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- ② 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심의, 지방재정투융자심사, 지방재정공시심의, 예산성과금 심사 시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-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시에는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-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4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.
- ⑦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⑧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재정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시 재정활동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양주시 재정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)을 둘 수 있다.

- ② 자문단은 위원회 위촉위원 중 학계, 민간 전문가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- ③ 자문단은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재정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
 1. 시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2. 시 자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
 3.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경영성과 예측 및 분석에 관한 사항

4. 시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
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의뢰하는 사항

⑤재정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 및 보궐위촉)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당해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

3.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0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본 조례 제2조제3호 및 「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9조의 개정 규정은 「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의거 설치된 “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

위원회”의 임기가 만료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대행)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“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”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① 「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」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② 「양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」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| 소관 실·과·소 | | 기획감사담당관실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 안 자 | 담당과장 | 기획감사담당관 백 윤 기 |
| | 담당주사 | 예산담당 신 대 수 |
| | 담당자 | 김경아(☎ 031-820-2066) |

관계법령 발췌서

【 지방재정법 】

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,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7조(재정투·융자사업에 대한 심사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·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.

제48조(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,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0조(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
1. 세입·세출예산의 집행상황

2.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
 3. 지방채·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
 4. 채권관리현황
 5. 기금운용현황
 6.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 7.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
 8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·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】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2.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 지방재정법시행령 】

제44조(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제4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.
 ②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제70조(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 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【 투융자사업 심사지침(경기도) 】

학계전문가, 공무원, 민간단체소속원 등 15인 이내 구성
 - 시·도 및 일반시 : 위원 중 공무원은 3분의 1 이내로 함.

*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가능하며, 광역·기초자치단체 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